

관세법

1.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50점)
 - (1) 종합보세구역의 의의, 지정, 설치·운영 (20점)
 - (2)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의 의의와 외국인 관광객의 범위 (5점)
 - (3)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5점)
 - (4)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세환급 (5점)
 - (5) 판매인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10점)
 - (6) 환급창구운영사업자 (5점)
2. 관세법령상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와 조정관세의 부과사유에 있어, ①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②조정관세의 의의, ③조정관세의 부과대상, ④조정관세의 적용세율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3. 관세법령상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의 판단기준을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물품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4.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수입신고전 물품 반출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5. 관세법령상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과 관련하여, ①원산지 확인기준, ②원산지허위물품의 통관제한, ③환적물품에 대한 유치를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6. 관세환급특례법령상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①환급대상 원재료의 인정요건, ②환급대상 수출등의 이행요건, ③환급신청의 인정요건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시오. (10점)

관세율표 및 상품학

1. 관세율표 제4부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22류 및 제23류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10점)

(2) 제16류(소호 제1602.10호), 제20류(소호 제2005.10호, 소호 제2007.10호), 제21류(제2104호)에 분류되는 균질화한 물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3) 제4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주를 모두 쓰시오. (10점)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HS 해설서를 근거로 함) (10점)

- ①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3가지 요건
- ②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2가지 실례

(5) 다음 주(Note) 규정을 쓰시오. (10점)

- ① 제17류 소호주1
- ② 제20류 주4 및 주5
- ③ 제22류 주2 및 주3

2. 다음은 관세율표 제85류에 분류되는 소자(素子, Elements)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트랜지스터(Transistors)	-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C)
- 사이리스터(Thyristors)	-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
- 인덕터(Inductor)	- 전기저항기(Electrical resistors)
- 발광다이오드(LED)	- 수정진동자(Crystal vibrator)

(1) 수동소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모두 고르시오.

(2) 다음 품목의 HS 4단위 호(Heading)를 쓰시오.

- ①트랜지스터(Transistors)
- ②사이리스터(Thyristors)
- ③인덕터(Inductor)
- ④발광다이오드(LED)
- ⑤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C)
- ⑥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
- ⑦전기저항기(Electrical resistors)
- ⑧수정진동자(Crystal vibrator)

3. 제96류에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을 분류한다. 다음 내용을 쓰시오. (10점)

(1) 관세율표 제96류 주1 및 주2

(2) 관세율표 제96류의 분류체계(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4. 관세율표에서 특정한 주(Note)의 용어는 관세율표 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주(Note)에서 ‘이 표에서 ~ (Throughout the Nomenclature)’라는 표현이 사용된 용어의 규정은 제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율표 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음 주(Note)에 대하여 보기와 같이 쓰시오.

< 보 기 >

제72류 주1: 강, 스테인리스강, 그 밖의 합금강

- ① 제51류 주1
- ② 제54류 주1
- ③ 제15부 주2
- ④ 제15부 주3
- ⑤ 제15부 주4

(2) 주(Note)에서 ‘이 표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 (Except where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throughout the Nomenclature any reference to ~)’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용어의 규정은 관세율표 전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다음 주(Note)의 용어와 내용을 쓰시오.

- ① 제1부 주2
- ② 제40류 주1

5. 관세율표 제5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다음은 관세율표 제25류 주1 규정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①),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잘게 부순 것, (③), (④),
(⑤), 자기선광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
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⑥)·(⑦)·
(⑧)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2) 관세율표 제27류의 NGL(제2710호) 및 LNG(제2711호)에 대하여 약어를 풀어
(Full name)쓰시오.

- NGL
- LNG

6. 관세율표상 2개의 류(Chapter)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을 열거한 것이다. 해당
되는 류 2개를 각각 쓰시오. (10점)

- ① 기어박스(Gear box)
- ② 유장농축 단백질(Whey protein concentrates)
- ③ 중량측정기기(Weighing machinery/Balances)
- ④ 우표(Postage)
- ⑤ 나프탈렌(Naphthalene)

관세평가

1. 아래의 거래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구매자 A는 미국에 소재하는 판매자 B로부터 산업자동화 설비를 수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측정장비의 가격은 USD 400,000이며, 검사장비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가격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괄하여 USD 600,000이다.(단, 구매자와 판매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님)

위 물품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일체의 비용 및 구매자 A가 별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비용 ①: 위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A는 일본 J사에 쟁점물품에 대한 “권리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는 J사가 직접 B사에 무상송부하였고, 측정장비의 사양과 규격, 치수를 기재한 구매확인서는 구매자 A사와 협의 하에 우리나라에 소재한 일본 J사의 지사가 작성하여 B사에 송부하였다. “권리사용 계약서”에는 설계도면 작성대가는 USD 50,000이고, 구매확인서 작성대가는 USD 25,000으로 명시되어 있다.
- 쟁점비용 ②: 구매자 A는 쟁점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자체개발한 특수포장재를 판매자 B에게 무상으로 송부하였다.(자체개발비 USD 4,000, 포장작업 관련 비용 USD 3,000)
- 쟁점비용 ③: 판매자 B는 제품 완성 후 수출국 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발급비용 USD 10,000을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구매자 A에게 청구하였다.
- 쟁점비용 ④: 쟁점물품을 작동하기 위해 기계장치에 S/W가 설치되었고, 구매자 A는 S/W 구입비로 USD 60,000을 판매자 B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
- 쟁점비용 ⑤: 구매자 A는 쟁점물품에 대해 설계도와의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오작동 여부를 Test하기 위해 수출국에 국내 엔지니어를 파견하였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 USD 30,000을 엔지니어링 회사에 지불하였다.
- 쟁점비용 ⑥: 구매자 A는 운송회사 및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항까지의 운송료 및 보험료로 운임 USD 4,000 및 보험료 USD 2,000을 지급하였다.

※ 동시선적된 측정장비, 검사장비 및 자동자료처리기계는 기능단위기기로 분류되고, 관세율 8% 적용대상이다.

판매자 B는 구매자 A에게 다음과 같이 송품장을 발송하였다.

[인보이스 1. 청구내역]

- FOB 조건, 측정장비 가격 USD 400,000, 검사장비 및 자동자료처리기계 가격 USD 600,000, 총금액 USD 1,000,000
- 특별고객사 할인정책에 따라 총금액의 5% 할인을 적용
- 물품설치를 위한 판매자 B의 엔지니어 파견비용 USD 20,000
- 최종청구금액: USD 970,000(엔지니어 파견비용 USD 20,000 포함)

[인보이스 2. 청구내역]

- S/W구입비 USD 60,000 및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USD 10,000

(1) 과세가격 결정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해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5점)

(2) 거래가격방법 적용을 위한 기본요건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시오. (15점)

- ① 수출판매가 성립하는지 여부 (3점)
- ② 일괄거래에 대한 평가쟁점 (4점)
- ③ 쟁점할인이 관세평가상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 (4점)
- ④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4점)

(3) 각 쟁점비용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 서술하시오. (25점)

- ① 쟁점비용 ①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 및 평가처리 (6점)
- ② 쟁점비용 ②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 및 평가처리 (4점)
- ③ 쟁점비용 ③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 및 평가처리 (4점)
- ④ 쟁점비용 ④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 및 평가처리 (4점)
- ⑤ 쟁점비용 ⑤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 및 평가처리 (4점)
- ⑥ 쟁점비용 ⑥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 및 평가처리 (3점)

(4) 제시된 거래내용에서 쟁점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정하시오. (5점)

2. 아래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6점)

(2)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할 과세가격을 산정하시오. (4점)

우리나라 수입자 A는 수출자 B로부터 반도체 노광장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특수소모성 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수입자 A사에 대한 정기 법인심사결과, 특정기간 중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거래가격을 부인하기로 하였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발견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와 협의 후 평가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제4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거래내역>

- 1) 수입국 내에서 당해 평가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최대수량으로 판매한 단위 가격에 해당 수량을 곱한 총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40,000,000 c.u.임 (단, 매출에누리 금액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 2)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구매자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수입자를 대신하여 권리사용료 10,000,000 c.u.를 별도로 지급
- 3)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상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은 25%임
- 4)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동종·동류의 비율은 18%임
- 5)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은 1,000,000 c.u.임
- 6)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해외소재 구매대리인에게 구매수수료 500 c.u. 지급
- 7)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8%, 덤핑방지관세율은 17%임

3. 아래의 2가지 사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사례 1) 미국에 소재한 판매자 A사는 화학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교육·실험용 기자재를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구매자 B에게 프로모션 행사 차원에서 Price List 대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사례 2) 일본에 소재한 판매자 C는 국내 수입자 D에게 담배 각초원재료를 수출하면서 국내 수입자 I에게 필터가공 등 담배완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전량을 판매자 C의 국내법인에게 판매하도록 계약하였다.

(1)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거래가격 수용여부를 서술하시오. (4점)

(2) (사례 1)에 대한 제1방법 적용가능여부 및 평가처리방법을 서술하시오. (3점)

(3) (사례 2)에 대한 제1방법 적용가능여부 및 평가처리방법을 서술하시오. (3점)

4.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OECD Guideline에 의하여 산정된 정상가격을 관세평가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서술하시오. (3점)

(2) WTO평가협정과 OECD Guideline에서의 “수출판매가격”에 대한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7점)

5. 아래의 거래상황을 바탕으로 구매자 B가 부담하는 광고비의 과세가격 가산여부를 서술하시오. (10점)

우리나라 구매자 B는 외국의 판매자 S로부터 세탁기를 수입하고 있다.

양사는 EXW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거래금액의 10%를 광고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하고, 계약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의 광고회사를 선정하여 광고비로 각각 5%씩을 지급하였다.

양사는 이와 같은 거래관계를 장기간 유지하여 오다가 판매자 S는 대금지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부담하던 광고비(전체 거래금액의 5%)를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체 거래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구매자인 수입자는 전체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

6. 아래의 거래상황을 바탕으로 보세공장에서 생산되어 신고하는 100,000개의 ASIC(주문자형 반도체) 칩의 과세가격에 포토마스크의 권리사용료 가산여부를 서술하고,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를 산정하시오. (10점)

우리나라 수입자 I는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수출자 X와 포토마스크를 5,000 c.u.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 수입자 I는 5,000개까지는 원권리자에게 별도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5,000개를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초과 생산수량 개당 0.1 c.u.의 권리사용료를 수출자 X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수입자 I는 수출자 X와 특수관계이나 판매상황 검토를 통하여 볼 때, 수출 판매가격 결정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입자 I는 포토마스크를 우리나라에서 타사가 운영하는 보세공장 B에 무상으로 보내어 포토마스크의 설계가 웨이퍼상에 재현되어 칩 100,000개를 생산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경제적 내구연한은 100,000개이다.)

※ 평가판단은 권리사용료 자체에 대한 가산여부와 금액에 한정한다.

무역실무

1. 해상보험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 (1) 피보험이익의 의의와 요건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 (2) 2009년 개정 신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2009 revision)의 (B)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위험을 일반면책, 선박의 불내항(Unseaworthiness) 및 부적합면책, 전쟁위험면책, 동맹과업위험면책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3)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8조의 보험서류의 수리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제35조의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한국 중재법상 임시적 처분 전의 잠정적 처분의 내용과 임시적 처분의 요건을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4. 중계무역에 사용되는 제3자선화증권과 스위치선화증권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5. 대외무역법령 및 관리규정상의 수출입승인의 요건과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기준을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6. 외국환거래법령상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관련한 이행보증예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지급사유와 반환사유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